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수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 카페테일바, 다실, 연회실, 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
관한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권 확보·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자치구의 보행환경 개선시책 수립 및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p>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p> <p>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p> <p>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자치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할 수 있다.</p> <p>제9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최초의 기본계획은 본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시행토록 한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유통단지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4. 유통단지개발 등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수립, 유통단지의 지정 및 유통단지관리지침중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p>6. 기타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p> <p>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관리실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경제국장 2. 도시계획국장 3. 도로국장 4. 정책기획관 5. 재정기획관 6. 환경기획관 7. 교통기획관 8. 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p>제 4 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p> <p>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제 5 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p> <p>제 6 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p> <p>제 7 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 8 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p> <p>② 간사는 대중교통2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계장이 된다.</p> <p>제 9 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회의록에는 회의내용을 기재하고 출석위</p>
--	---